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5.

발 의 자 : 송재봉·김문수·이연희
이광희·이강일·민병덕
김남근·정진욱·박정현
김기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·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·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·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수탁·위탁 거래는 “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,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”로 명시되어 있으며,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가 수탁·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제조, 공사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.

최근 거래 방식의 다양화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거래 당사자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·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

확대하여 유통,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
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).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정부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원가절감 등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 모델(이하 “성과공유제”라 한다)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)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·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·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(이하 “성과공유제”라 한다)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8조(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) ① 정부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원가절감 등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 모델(이하 “성과공유제”라 한다)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